

제204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 09. 15)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등-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류현복)

< 목 차 >

I. 검토경과	1
II. 제출근거	1
III.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1
1. 결산총괄	1
2. 세입결산	2
3. 세출결산	2
4. 세입·세출 처리상황	2
5. 세입결산	3
6. 세출결산	4
7.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	5
8. 계속비 결산	7
9. 다음연도 이월사업	8
IV. 예비비결산	9
V. 기금결산	10
VI. 채권액결산	11
VII. 채무액결산	12
VIII. 보조금결산	13
IX. 기타 검토의견	14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 검 토 보 고 서

I 검토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4. 08. 20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14. 08. 20
- 상정일자 : 2014. 09. 15.
- 의안번호 :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2014 ~51호)
2013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14 ~52호)

II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 거창군재무회계규칙 제30조
-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

III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

1. 결산총괄(결산서 p5)

(단위 : 백만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차인잔액 (이월액)
합 계	634,885	639,109	495,899	143,209
일반회계	551,838	554,649	445,698	108,951
특별회계	83,047	84,460	50,201	34,259

2. 세입결산(결산서 p15)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B-C)	미수납액 처리		비율(%)	
					결손처분	이월	C/A	C/B
계	634,885	643,176	639,109	4,067	372,055	3,695	100.7%	99.4%
일반회계	551,838	558,019	554,649	3,370	372,055	2,998	100.5%	99.4%
특별회계	83,047	85,157	84,460	697		696	101.7%	99.2%

3. 세출결산(결산서 p17)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성립 후증감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D)	지출액 (E)	다음연도 이월액 (F)	불용액 G=C-E-F	미수납액 G/C (%)
계	490,166	144,719	634,885	539,079	495,899	82,210	56,775	8.94%
일반회계	411,436	140,401	551,838	487,680	445,698	75,959	30,180	5.47%
특별회계	78,730	4,317	83,047	51,399	50,201	6,251	26,595	32.02%

4.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19)

(단위:백만원)

구 분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차인잔액 (A-B)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계	639,109	495,899	143,210	42,989	24,927	14,295	3,816	57,183
일반회계	554,649	445,698	108,951	37,974	23,691	14,295	3,801	29,190
특별회계	84,460	50,201	34,259	5,015	1,236	0	15	27,993

5. 세입결산(결산서 p25)

가.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과 목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C)	미수납액처리		비율 B/A
					결손처분	익년도이월	
계		558,019	554,649	3,370	372	2,998	99.4%
지방세		19,928	18,616	1,312	289	1,022	93.4%
세외수입		183,332	181,273	2,058	83	1,975	98.9%
	경세외수적입	7,568	7,557	11	-	11	99.8%
	임세외수적입	175,764	173,716	2,048	83	1,965	98.8%
지방교부세		204,364	204,364	-	-	-	100%
조정교부금 및 재정정보전금		10,565	10,565	-	-	-	100%
보조금		139,830	139,830	-	-	-	100%

나.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액)
합 계	37,230,769	39,291,643	13,092,626	2,560,542	23,638,475
담주변지역지원	805,795	805,795	801,731		4,064
농업발전기금	20,877,429	20,877,429	156,226		20,721,203
의료보호기금	725,417	725,417	709,917		15,500
산업단지조성사업	6,691,489	7,642,190	5,392,695	232,101	2,017,394
수질개선	7,113,857	8,224,030	5,785,391	2,328,441	110,198
주차장관리	982,792	982,792	246,666		736,126
기반시설	33,990	33,990	0		33,990

6. 세출결산(결산서 p49)

가.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A)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B)	이월액(C)	불용액 (D=A-B-C)
계	551,838	487,680	445,698	75,959	30,180
의회운영위원회	916	840	840	-	76
총 무 위 원 회	198,072	171,580	163,627	14,296	20,146
산업건설위원회	352,850	315,260	281,231	61,663	9,958

나.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불용액)
합 계	37,230,769	39,291,643	13,092,627	2,560,542	23,638,474
댐주변지역지원	805,795	805,795	801,731		4,064
농업발전기금	20,877,429	20,877,429	156,226		20,721,203
의료보호기금	725,417	725,417	709,917		15,500
산업단지조성사업	6,691,489	7,642,190	5,392,696	232,101	2,017,393
수질개선	7,113,857	8,224,030	5,785,391	2,328,441	110,198
주차장관리	982,792	982,792	246,666		736,126
기반시설	33,990	33,990	0		33,990

7.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사용 현황(결산서 p361)

□ 이 용(일반회계) : 해당사항 없음(p363)

□ 전 용(일반회계) (p364)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총 8건				3,854,538	167,601	167,601	
주민생활 지원실	사회복지일반	아림1004운동	사무관리비	10,000	4,000		천사증 발급
		"	자산및물품 취득비	30,442		4,000	
"	노인청소년	노인돌봄서 비스	사회복지보조	954,423	15,000		돌보미사업 효율적추진
		"	자산및물품 취득비			15,000	
"	"	원스톱지원센 터운영	민간자본보조	25,000	25,000		원스톱 지원체제 효율화
		"	사회복지보조			25,000	
"	취약계층지원	인건비	사회복지보조	63,601	63,651		운영체제 전환
		"	기간제근로자 보수			63,651	
재무과	일반행정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812,272	13,000		청사정비
		"	시설비	1,068,582		13,000	
문화 관광과	문화재	박물관운영지 원	연구용역비	20,000	20,000		조직개편 사업비전 용
		향토문화유 적관리지원	"			20,000	
건설과	도로	도로유지관리	자산및물품 취득비	687,780	24,000		염화칼슘 구입
		"	재료비	194,900		24,000	
농업기술 센터	농업농촌	천적생태과학 관운영	재료비	18,000	3,000		천적사육 공급
		"	자산및물품 취득비			3,000	

검 토 의 견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에 근거하여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간 전용을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아림 1004운동,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One-stop지원센터 운영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이 체(일반회계)(p365)

단위 : 천원

과 목				전용금액		사 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69 건				72,766,809	76,766,809	조직개편 등

검 토 의 견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서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 2012. 12. 26 거창군 행정기구 조례개정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로서 타당하다고 검토됨

8. 계속비 결산(p383)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총 투자액				당 해 년 도 집 행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50,1402,752	22,471,241	27,615,463	16,048	27,014,945	12,719,695	14,295,250	
목재문화체험장	625,000	0	625,000	0	625,000	0	625,000	0
농촌테마공원조성	2,649,000	0	2,649,000	0	2,649,000	0	2,649,000	0
소규모용수개발	17,983,435	8,620,884	9,356,679	5,872	2,961,816	1,417,132	1,544,684	0
일반농산어촌개발	4,377,828	2,632,000	1,745,828	0	1,745,828	1,745,828	0	0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1,130,674	5,441,568	5,689,106	0	11,130,674	5,441,568	5,689,106	0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3,979,105	3,039,033	940,072	0	3,979,105	3,039,033	940,072	0
살바레포츠타운조성	9,357,710	2,737,756	6,609,778	10,176	3,923,522	1,076,134	2,847,388	

검 토 의 견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관리하며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 부터 5년 이내로 하며,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월내역은 모두 타당하다고 하겠음.

9. 다음연도 이월사업(결산서 p399)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이월액	비 고
명시이월	계	111	84,544	37,973
	일반회계	111	84,544	37,973
	특별회계	0	0	0
사고이월	계	96	141,522	23,690
	일반회계	96	141,522	23,690
	특별회계	0	0	0
계속비이월	계	12	18,177	14,295
	일반회계	12	18,177	14,295
	특별회계	0	0	0

검 토 의 견

-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2013년도 예산이월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이 111건 37,973백만원, 사고이월이 98건 23,690백만원, 계속비이월 12건 14,295백만원으로 시기미도래, 공기미도래(부족), 동절기 공사중지, 보상지연 등의 사유로 대부분 이월되었음.
- 이월 사유 중 사업위치 미확정, 집행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기본계획 미확정,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비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은 당초 보다 치밀하고 확실한 계획 수립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IV 예비비결산 (결산서p395)

(단위 : 천원)

과 목			지출 결정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합 계			547,170	542,237	542,237	0	4,932
건설과	도로	도로유지관리	75,600	70,669	70,669	0	4,930
	도로	도로유지관리	441,570	441,570	441,570	0	0
보건소	보건의료	전염병예방관리	30,000	29,998	29,998	0	2

검 토 의 견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예비비) 제 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본예산에 일반회계의 1/100이상을 계상하여야 하며, 지출결과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3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외 2건에 5억 4,223만 7천원을 집행하였음.

V 기금결산 (결산서p515)

(단위 : 천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㉑+㉓)
		계 ㉓=㉑-㉔	조성액㉑	사용액㉒	
계	10,483,586	625,790	1,778,406	1,152,616	11,109,376
사회복지기금	3,774,624	45,897	179,940	134,043	3,820,521
식품진흥기금	26,499	15,660	18,910	3,250	42,159
재난관리기금	945,496	-131,421	868,902	1,000,323	814,075
중소기업육성 기금	5,137,140	672,466	672,466	0	5,809,606
아름예술행사 진흥 기금	501,875	56	15,056	15,000	501,931
옥외광고정비 기금	43,932	21,296	21,296	0	65,228
체육진흥기금	54,020	1,836	1,836	0	55,856

검 토 의 견

○ 2013년말 현재 기금은 7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10,483,586천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778,406천원이며 사용액은 1,152,616천원으로 차인잔액은 11,109,376천원임

○ 기금 지출액은 1,152,616천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 사회적약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도모에 134,043천원
- 음식문화개선관련 사업비 3,250천원
- 재난예방 사업추진에 1,000,323천원
- 아릅예술행사 행사지원에 15,000천원이 지출되었음

V 채권액 결산 (결산서P541)

○ 회계별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년 도 발 생 액	당 해 년 도 소 멸 액	당해년도말 잔 액
합 계		5,120,339	192,000	284,571	5,028,406
일반 회 계	소 계	4,480,939	45,578	110,000	4,416,517
	학자대여금	4,310,939	45,578	0	4,356,517
	농특산물 판매장	170,000	0	110,000	60,000
특 별 회 계	소 계	261,779	66,606	115,405	212,980
	농업발전기금	122,955	6,731	0	129,686
	산업단지조성	138,824	59,875	115,405	212,980
기 금	소 계	377,621	80,454	59,166	398,909
	저소득생활안정기금	317,621	55,322	47,522	325,421
	기초생활보장기금	60,000	25,132	11,644	73,488

※ 채권액은 원금 + 이자 기준임.

검 토 의 견

- 2013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5,120,339천원으로 당해연도에 192,638천원이 발생하고, 284,571천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5,028,406천원임.
- 채권 종류별 현황(p545)을 보면 보증채권이 60,000천원, 융자금 채권 4,748,220천원, 미수금채권 83,294천원임

VI 채무액 결산(결산서p551, 554)

○ 회계별 현황(p551)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년 도 발 생 액	당 해 년 도 소 멸 액	당해년도말 잔 액
합 계		16,043,400	0	15,287,400	756,000
일 반 회 계		1,450,000	0	1,450,000	0
기타 특별 회계	산업단지 조성사업	3,727,000	0	2,971,000	756,000
공기 업 특 별 회 계	소 계	10,866,400	0	10,866,400	0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866,400	0	10,866,400	0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 상환재원별 현황(p554)

(단위 : 천원)

회계	종류	상환재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 말현재액
				계(⊕-⊖)	발생액⊕	소멸액⊖		
일반 회계	지방 채무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1,450,000	△1,450,000		1,450,000		0
		기타						
기타 특별 회계	지방 채무	기타	3,727,000	△2,971,000		2,971,000		756,000
공기업 특 별 회 계	지방 채무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9,630,000	△9,630,000		9,630,000		0
		기업수입부담						
		실수요자부담	1,236,400	△1,236,400		1,236,400		0
		기타						

VII 보조금 결산(본예산)(부속서류 p239, 340)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수 령 액	집 행 액	이월액	집행잔액 (반납액)
합 계		183,855,689 (66,549,135)	183,284,451 (66,547,040)	151,134,489 (50,253,550)	26,036,517 (13,433,792)	6,113,445 (2,859,698)
일 반 회 계		176,527,727 (66,533,708)	175,956,489 (66,531,613)	146,002,267 (50,240,011)	23,857,930 (13,433,792)	6,096,292 (2,857,810)
특별회계	의료보호 기금	231,194 (0)	231,194 (0)	231,194 (0)	(0)	(0)
	수질개선	7,096,768 (15,427)	7,096,768 (15,427)	4,901,028 (13,539)	2,178,587 (0)	17,533 (1,888)

※ 군비부담액은 66,547,040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36.3%에 해당함

※ ()내서는 군비보조금 임.

검 토 의 견

- 2013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183,284,451천원으로 예산액 183,855,689천원 대비 99.7%이며, 집행액은 151,134,489천원으로 예산액의 82.2%이며 26,036,517천원이 이월되고 6,113,445천원을 반납하였음.
- 군비부담액은 66,547,040천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수령액)에 대하여 36.3%에 해당됨

VIII 기타 검토의견

-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 등 집행실적을 예산사업구조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기록·정리한 것이며,
-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책정된 예산액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 여부 등 확인과 우리군이 표방하고 있는 군정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합목적성, 합법성을 가지고 재정적 수입과 지출이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 이를 통해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결산심사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방향을 보면, 건전한 재정운영, 안정된 주민생활 및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생활 안정도모, 미래대비 투자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로 자체 재원확충,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안전성 확보 등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고 지방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현액의 22.56%인 143,209,475천원이 이월되고 53,818,69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 세입면에서 보면 군민 1인당 재정규모는 8,779천원, 지방세 부담액은 295천원으로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지역부존자원 개발과 경영 수익사업의 활성화로 지역 세입기반 확충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 또한 세출면에서는 지방재정법령, 각종 조례 및 규칙에 의거 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으로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가 필요로 하는 재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산집행과정에 있어 건전성, 계획성, 윤리성,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경비의 집행에 있어서는 각 부서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전시성, 선심성, 소모성, 불요불급 경비의 억제와 예산절감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됨